

중앙일보

종합

2004년 5월 11일(화요일) A-3

일제징용 보상소송 정재원씨

가주 대법원에 상고

일본기업(오노다 시멘트사)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30일 제2순회 가주항소법원에서 가각판결을 받았던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81)씨가 7일 주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가주 의회가 제정한 징용배상 특별법(일명 헤이든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항소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주대법원은 60-90일내로 케이스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혜원 변호사는 "변호인단

모두가 이번 상고결정에 동의했다"며 "만일 주대법원이 케이스 검토를 기각한다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항소법원은 지난 3월30일 일명 헤이든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정씨의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1951년 국제조약에 따라 2차대전 전범에 대한 피해보상이 모두 종결됐으며 따라서 전범문제가 미국 영토 안에서 다시 다루지는 것은 조약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yha@joongangusa.com>